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메리츠 주가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34호[ELS-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 주가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34호[ELS-파생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메리츠 주가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34호[ELS-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메리츠자산운용(주) (02-6320-3000)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5년 5월 2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6월 1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15년 6월 15일 ~ 2015년 6월 30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각 판매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참고-펀드용어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파생결합증권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하기 위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당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투자권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메리츠 주가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34호[ELS-파생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404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단위형**(추가로 자금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

주1) 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2015년 6월 15일 ~ 2015년 6월 30일**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메리츠 주가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34호[ELS-파생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404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최초설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1개월**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만기 이전에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금이 회수되는 날의 다음영업일까지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B1층 (대표전화: 02 - 6320 - 30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수	규모	
박은노	1972년	Structured Products Director	674 (개)	9,577 (억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98년~'99년 LG 증권 -'99년~'05년 LG 투신운용 -'05년~'08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08년~ 메리츠자산운용 Structured Products Team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파생형)투자신탁, 개방형, 단위형

주1)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등 주요사항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 자 대 상	투 자 한 도	주 요 내 용
파생결합증권	90% 이상	KOSPI200지수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법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및 만기 1년 이내의 상품, 환매조건부매수에 한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투자자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주 요 내 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로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합니다.

동일종목 증권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p> <p>다만,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다목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단, 이 투자한도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인 신탁재산의 90%이상을 **“KOSPI200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된 매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조건이 내재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 비교지수

이 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성과가 변동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므로 별도의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수익구조

◆ 투자대상 파생결합증권 주요 내용

1) 발행사

발행사	신용등급	인터넷 홈페이지
대우증권	AA+	www.kdbdw.com
신한금융투자	AA0	www.shinhaninvest.com
KB투자증권	A+	www.kbsec.co.kr
IBK투자증권	A+	www.ibks.com

2) 만기: 3년

3) 조기상환주기: 매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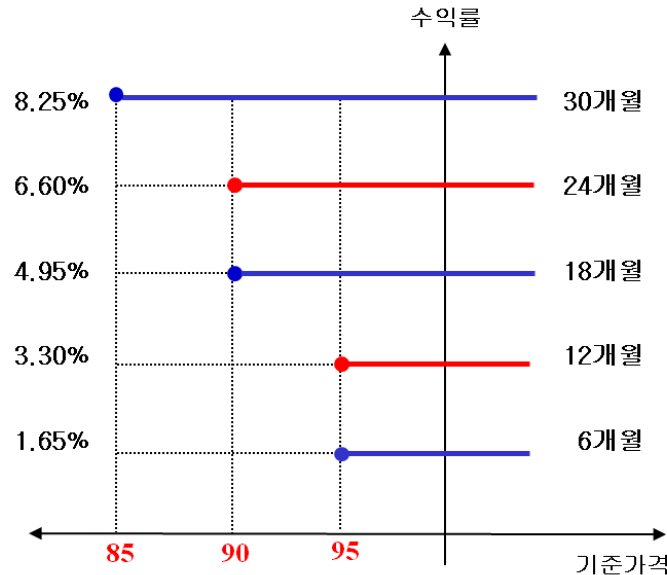
4) 기초자산: KOSPI200지수

5) 손익 발생 요건

(가) 조기 상환 조건

중간기준지수결정일에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지수의 **95%(6개월), 95%(12개월), 90%(18개월), 90%(24개월), 85%(30개월)이상인 경우**

⇒ 원금과 연**3.3%**수준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



(나)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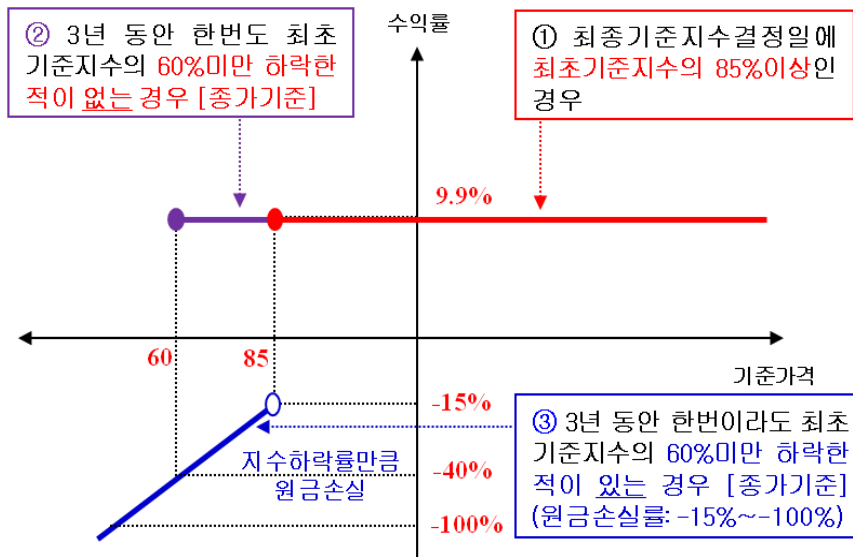
① 최종기준지수결정일에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지수의 85%(36개월)이상**인 경우

⇒ 원금과 연3.3%수준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

② 최종기준지수결정일에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지수의 85%(36개월)미만**이면서, 투자기간 중 [종가기준] **최초기준지수의 60%미만**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원금과 연3.3%수준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

③ 최종기준지수결정일에 기초자산의 증가가 **최초기준지수의 85%(36개월)미만**이면서, 투자기간 중 [종가기준] **최초기준지수의 60%미만**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 손실

[만기상환금 : 설정원본×(최종기준지수/최초기준지수), 원금손실률 : -15%~-100%]



※ 유의사항: 상기의 수익률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을 의미하며, 기타자산의 운용 결과 및 투자신탁 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 전체의 수익률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펀드 일정표

구 분	일 정
모 집 기 간	2015. 06. 15 (월) ~ 2015. 06. 30 (화)
펀드 설정일	2015. 06. 30 (화)
최초기준지수결정일	2015. 06. 30 (화) 종가

조기 (만기) 상환	회 차	중간(최종)기준지수 결정일	조기 상환 시 상환금 지급일
	1	2015. 12. 23	2015. 12. 29
	2	2016. 06. 27	2016. 06. 30
	3	2016. 12. 23	2016. 12. 28
	4	2017. 06. 27	2017. 06. 30
	5	2017. 12. 22	2017. 12. 28
	6(최종)	2018. 06. 27	2018. 0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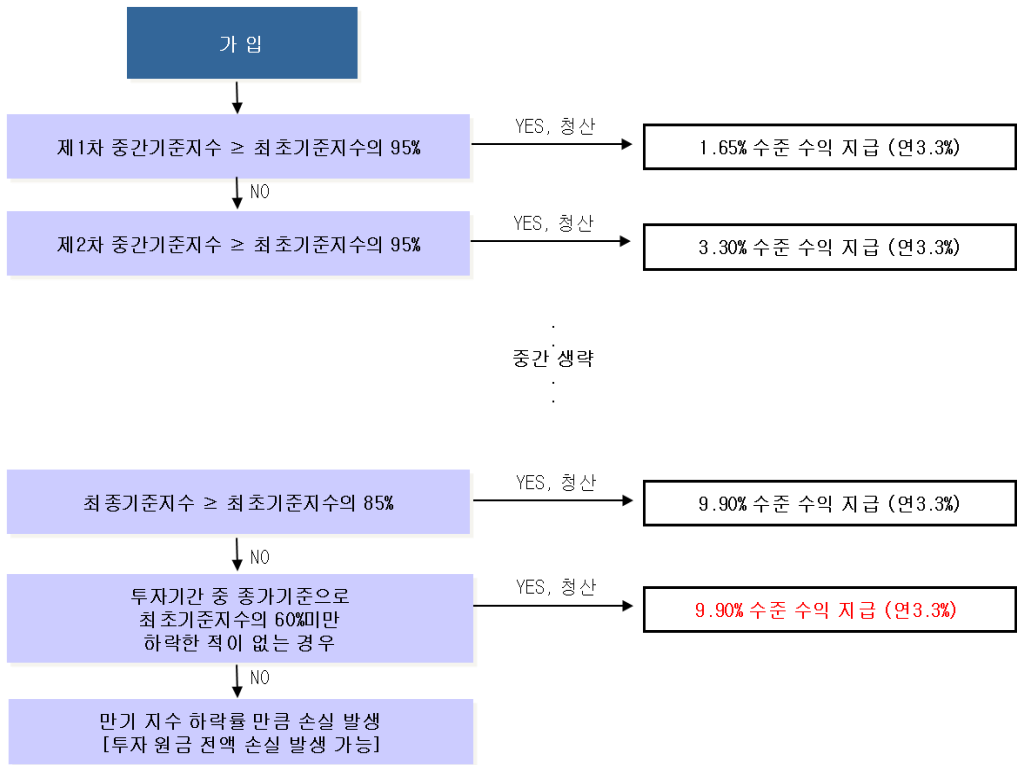
* **유의사항:** 상기 모든 일정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평가일자는 해당 기초자산 거래소영업일 기준이며, 거래소영업일은 거래소가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하는 날을 말합니다. 거래소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평가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규시장 개장을 제외한 임시 공휴일 또는 기초자산의 일시적 매매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기초자산가격을 확정할 수 없거나 예정된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지급일은 다음 영업일로顺延되며 기초자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어느 한 기초자산에顺延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기초자산의 가격 관찰도 함께顺延됩니다. 편입된 파생결합증권 대금 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상환금 지급일은顺延하여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 환매 시에도 거래소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환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영업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조정 등

기초자산 지수(또는 주가,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최초기준지수 결정일, 중간(최종)기준지수 평가일 등]에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기초자산의 발행자 또는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합리적인 상관례를 참조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각 기초자산에 대한 최초기준지수 결정일, 중간(최종)기준지수 결정일 또는 기타 지급일 등 투자신탁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상관행 및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이에 우선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 청산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 파생결합증권의 최초기준지수 결정일, 중간(최종)기준지수 결정일에 가격 제공자(거래소 등)가 당해 기초자산에 대하여 종가를 공표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매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거래정지, 기세상한가 및 기세하한가 등)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나) 거래소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 상의 오류로 인하여 파생결합증권의 상환 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 (다)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본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한 위험 회피 거래(비거주자와의 모든 거래를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 (라)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마) 관련 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 손익구조별 시나리오



◆ 기초자산의 최근 가격 추이

<KOSPI200지수 추이>



◆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관한 유의사항

투자자는 아래 파생결합증권 투자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1. 제시된 수익률은 투자대상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기재한 세전 수익률이므로, 과세율과 투자신탁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비율 및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규모 및 기타사정(기초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합리적인 가격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자의 지급능력 저하 또는 상실, 기초자산 기업의 증·감자·합병·분할 등)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상기 제시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최초기준지수, 중도·만기상환이 가능한 기초자산 가격수준 등을 사전에 정해진 파생결합증권 발행조건에 따라 조정하거나 집합투자업자와 발행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수익자가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투자대상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가격과 파생결합증권의 환매가격 괴리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제시수익률 및 수익구조와 환매 시 손익이 달라 질 수 있으며, 환매금액에 대한 고율의 환매수수료 부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소수 발행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므로 파생결합증권 발행자의 상환금 지급 지연·불이행과 같은 신용리스크가 분산되지 않으며, 발행자의 상환금 지급 지연·불이행으로 인한 투자신탁 원금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원금보존추구형 투자신탁도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4. 파생결합증권의 매매는 집합투자업자(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자의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 체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며,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계약의 내용은 이 증권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에 상당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권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에 인수계약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시장교란사유	KOSPI200지수의 증가가 파생결합증권의 투자기간 중 확정되지 못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증권시장이 예상치 않게 예정 거래 시간 이전에 조기 폐장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의 거래 중단 또는 기타 다른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종목의 조정을 수반하는 시장 교란 사유들은 파생결합증권 계약서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최초기준지수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시의 손익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의 기초자산의 증가를 말합니다.
중간기준지수	각 회차별 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증가를 말합니다.
최종기준지수	만기지수결정일의 각 기초자산의 증가를 말합니다.
상환금지급일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자금이 투자신탁으로 회수된 날의 익영업일을 말합니다.
종가	거래소 영업일의 정규매매 마감시간에 거래소가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 매매가격을 말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KOSPI200지수 의 변동에 의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증권 가격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가치는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KOSPI200지수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기초자산관련 주식시장 붕괴 등으로 인한 주가 폭락 시 원금손실이 가능(최대 -100%손실) 합니다.
거래상대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이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은 다른 증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을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 환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정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초자산가격이 연동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예상한 수익구조와는 다를 수 있으며, 환매수수료 징구 등으로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로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으며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는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입니다.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00%까지도 손실 가능합니다. 대우증권의 신용등급은 AA+, 신한금융투자의 신용등급은 AA0, KB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은 A+, IBK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은 A+[2015년 3월 기준(한신평평가)] 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발행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소수 발행자 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투자신탁은 거래상대방 집중위험에 노출됩니다.

권리내용 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은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병·증자·감자·주식소각 등 기초자산 본질 가치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 사태 등이 발생하여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본 증권에 권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발행자와 집합투자업자의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유동성위험과 높은 환매수수료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작으며, 중도 환매 요청 시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의 실제 중도 환매금액과 이론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다른 일반 펀드 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환매수수료는 전액 펀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환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도 환매에 따른 가격 손실 및 높은 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 상 설계되어 있는 최대 손실율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위험과 강제조기청산위험	기초자산의 거래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관련법규의 변경,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상환조건 및 상환금액)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원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으로 강제 조기청산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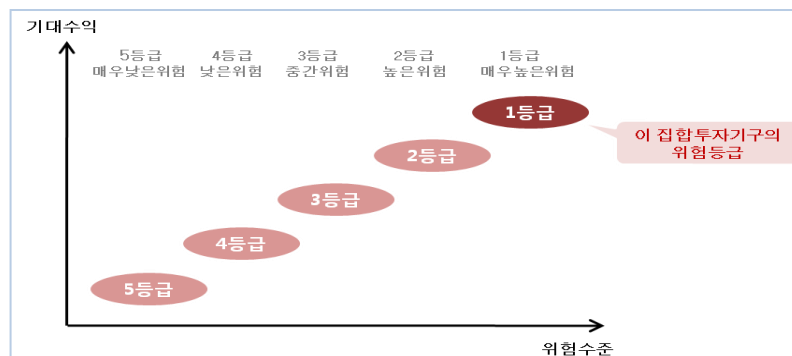
다. 기타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운용실적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3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이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채권평가회사·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 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 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 펀드 매니저가 변경 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 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단위형 상품으로, 신탁자산의 대부분을 **KOSPI200지수**에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며 최대 100%까지 손실가능 하므로 5등급의 위험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높은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증권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기시 기초자산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바,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장금리 대비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환매로 인한 초기투자목표 훼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구분	위험 수준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 비보존추구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보증 또는 담보가 없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40% 초과 7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상 실제 고위험자산 투자비율이 40% 초과 70%미만인 경우 포함) - 원금 비보존추구 파생상품에 30% 초과 6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원금 50%이상 보존추구형)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40%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차익거래 포함) (투자전략상 실제 고위험자산 투자비율이 40%이하인 경우 포함) - 일반적 보증이나 담보권 확보하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투자적격 신용등급이상 회사 보증 또는 담보권 확보로 원금보존 추구형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원금보존 추구형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 중 신용등급 A급 이상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주1) 이 위험등급분류는 메리츠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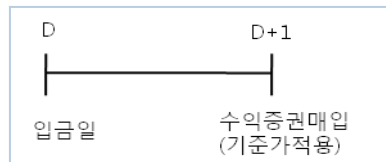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해당사항 없음

(3)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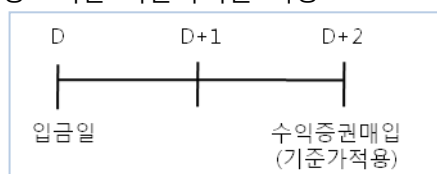
① 17시(오후5시)경과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 납입일의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17시(오후5시)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 납입일의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주1)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주2)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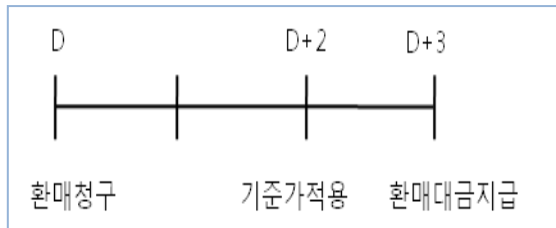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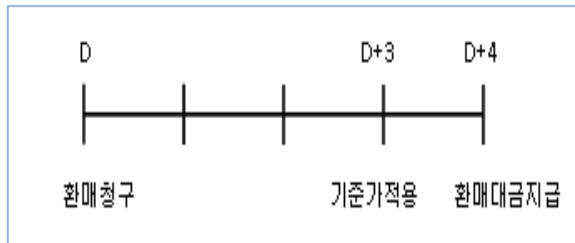
① 17시(오후5시)경과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②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주1)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주2)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수익증권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구분	환매 수수료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 미만	환매금액의 7%
파생결합증권 상환 이전	환매금액의 5%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7시(오후5시)까지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3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으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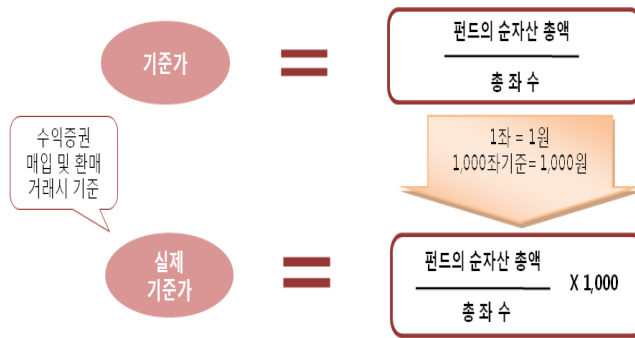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형 증권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또는 계산대리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 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 비율(%)	부과 기준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43%	매입시
환매수수료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 미만: 환매금액의 7%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 비율(%)	지급 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최초 2 개월 연 0.948%, 2 개월이후 연 0.0001%	매 2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	
신탁업자보수	최초 2 개월 연 0.060%, 2 개월이후 연 0.0001%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최초 2 개월 연 0.060%, 2 개월이후 연 0.0001%	
기타비용	연 0.007%	사유발생시
총보수및비용	최초 2 개월 연 1.075%, 2 개월이후 연 0.0073%	-
증권거래비용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또는 유사 펀드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또는 유사 펀드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예시

(단위: 1,000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수수료 및 보수·비용	61	62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투자수익율,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분배금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분배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분배를 유보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미실현 평가이익을 유보하는 경우
2. 투자신탁 재산의 총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로서 실현된 이익과 평가이익을 모두 유보하는 경우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 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이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 소득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과 관련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설정이전이므로 회계감사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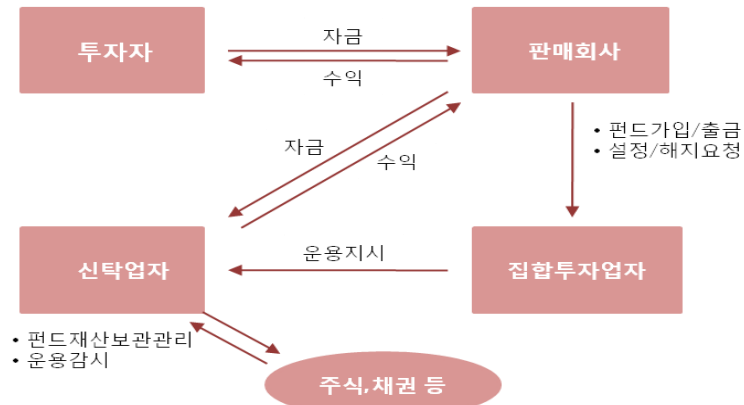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B1층 TEL) 02-6320-3000 http://www.meritzam.com/
회사 연혁	2008.05.06 회사설립 2008.07.11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8.07.28 메리츠증권 영업양수 2009.0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 2010.03.11 자본금 50억원 증자 2013.12.16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본금	132.3억원
주요주주현황	메리츠금융지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2)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구 분	제7기말	제6기말	구 분	제 7기	제 6기
	2014.12.31	2013.12.31		2014.01.01- 2014.12.31	2013.04.01- 2013.12.31
자산총계	16,246	14,389	영업수익	8,024	5,765
- 현금및예치금	10,102	9,307	- 자산관리수수료	2,841	2,722
- 유가증권	836	798	- 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	4,930	2,861
- 유형자산	304	437	- 유가증권매매익	6	9
- 이연법인세자산	298	156	- 이자수익 등	247	173
- 기타자산	4,706	3,691	영업비용	7,032	4,573
• 미수수익	1,642	1,464	- 임직원급여	4,536	2,859
• 무형자산	1,078	1,532	- 복리후생비	585	415
• 기 타	1,986	695	- 건물임차료	188	210
부채총계	1,805	675	- 전산운영비	288	253
• 예수부채등	1,805	675	- 기타제비용	1,434	836
자본총계	14,442	13,714	영업이익	991	1,192
- 자본금	13,230	13,230	영업외손익	-84	-233
- 자본조정	-74	-74	세전이익	907	959
- 기타포괄손익	8	-179	법인세비용	184	221
- 이익 잉여금	1,277	737	당기순이익	724	738
당기순이익	724	738	당기총포괄이익	728	730

*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함

라. 운용자산규모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 접형	파생형	기 타					
수탁고	4,375	15,578	3,064	0	0	10,608	0	334	2,629	0	0	36,588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소 및 연락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TEL) 02-1588-6200 http://www.busanbank.co.kr/
회사 연혁	1967.10 회사설립 1972. 6 증권거래소 상장 2005. 6 총수신 15조 달성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선관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4) 의무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위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이 유통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2~4층 TEL) 02-2168-0400 http://www.shinhanaitas.com
회사 연혁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 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T.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T.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T. 02-3215-1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 채권시기평가 정보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구성과 권한

- 이 집합투자기구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7.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인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등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와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에서 열람하거나 복사 등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동의,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 제 9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 247 조 제 5 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취득한도 초과 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법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투자증권거래>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 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 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마케팅 비용
-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 비용(숙식비 등)
-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③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함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장내파생상품거래>

-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동일함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 참고-펀드용어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